

소송 등의 판결·결정(2심)

1. 사건의 명칭	손해배상(기)
2. 원고·신청인	김OO 외 1인
3. 판결·결정내용	<p>1.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.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,296,723,704원과 그 중 각 1,294,438,781원에 대하여 2019.2.2.부터 2021.5.20.까지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</p> <p>2.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.</p> <p>3. 소송총비용 중 50%는 원고들이, 50%는 피고가 부담한다.</p>
4. 판결·결정사유	피고의 책임은 인정되나,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피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
5. 관할법원	서울고등법원
6. 판결·결정일자	2021년 5월 20일
7. 확인일자	2021년 5월 24일
8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<p>1. 본 판결에 의해 1심 선고금액 보다 약 41억원이 감액되었음</p> <p>2. 2심 판결문 검토 후 대법원 상고여부는 추후 판단 예정</p>